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8
------------	------

발의연월일 : 2016. 12. 29.

발 의 자 : 김도읍 · 이현재 · 이은권

김석기 · 조경태 · 이채익

정갑윤 · 김태흠 · 전희경

박찬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흡결이 있어서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안 제72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전단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7조 또는 제47조의1 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에 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